

2002년부터 달라지는 공정거래제도

한철수 | 공정위 총괄정책과 과장

1.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

(2001. 12. 21 국회의결, 2002. 4. 1부터 효력 발생)

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

-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개별행태별로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지정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등)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,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(시행령 개정중)

■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

-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지배력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충분히 확대하여 기업의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 마련

【적용제외 :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자】

-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 업종에의 출자
-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%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
- 민영화 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

【예외인정 추가】

-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(현재는 외국인이 30% 이상 최다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만 예외)
-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(시행령에 구체화)
- 법정관리, 화의,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
- 한도초과 출자해소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시행일(2001. 4. 1) 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

기업의 해소시한(2002.3월말)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

- 의결권제한대상 주식은 기업이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,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내역을 해당 기업이 공시토록 의무화
-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 위반시 의결권행사 주식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과징금부과
-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시한을 2년간 연장(2001. 3월말 → 2003. 3월말)

■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

-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%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변경, 임원임면,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경영권방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·보험사의 의결권행사를 허용

■ 회사정리·화의중인 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의무를 동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는 유예

■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부채비율 100%요건 등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를 1~2년간 유예

- 100%이하 부채비율 요건은 1년, 자회사 지분을 요건 등은 2년 유예

■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간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

- “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” → “과징금 납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”로 조정

2. 「경품고시」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

(2002. 1. 1부터 효력 발생)

-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총액이 1,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%를 초과하여도 부당한 경품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함

공정거래제도 개선사항 리스트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과
1	• 대규모기업 집단지정제도의 변경	• 자산총액 1위부터 30위까지의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상호출자, 출자총액, 채무보증을 제한 내지 금지	• 각 개별행태별 기업집단지정 -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- 채무보증, 상호출자금지기업집단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	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, 제10조 제1항, 제11조, 제14조제1항, (2002. 4. 1.)	기업집단과 503-9124
2	• 출자한도산정시 순자산의 산출방식 조정	• 순자산은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을 뺀 금액	• 순자산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을 뺀 금액	• 동법 제10조제2항제1호 (2002. 4. 1.)	기업집단과 503-9124
3	• 취득주식가액의 산정기준 조정	•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가격 기준	•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이 기준	• 동법 제10조제3항 (2002. 4. 1.)	기업집단과 503-9124
4	•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확대	• 지주회사, 금융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• <신설>	• 회사정리절차, 화의절차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(절차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함) • 출자제한적용회사가 다음 회사의 주식 취득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제한 적용제외 - SOC법인(취득일부부터 20년간, 10년 연장가능) - 정부투자기관, 공기업 민영화 대상회사, 정부출자기관과 각각의 계열회사 - 동종 또는 밀접관련회사 - 국가 또는 지자체가 3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(지분율이 30%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날부터 6월)	• 동법 제10조제7항 (2002. 4. 1.) • 동법 제10조제6항 (2002. 4. 1.) - 제1호 - 제2호 - 제3호 - 제4호	기업집단과 503-9124
5	•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확대	• 취득 또는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당, 주식배당으로 신주취득시 • SOC법인에 대한 출자	• 보유 주식의 비율내에서 신주 취득시 예외인정 • SOC법인에 대한 출자는 예외	• 동법 제10조제1항 단서 제1호 (2002. 4. 1.)	기업집단과 503-9124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과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인이 30%이상 최대 출자자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• <신 설> •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예외는 1998. 1. 1. 부터 2001. 3. 31.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정에서 적용제외로 전환 •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• 회사정리절차, 화의절차, 파산절차,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가 각각 진행중인 회사 주식은 그 절차기간중, 위 각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 • 예외인정대상을 2003. 3. 31.까지 취득한 주식으로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조동향 단서 제3호 (2002. 4. 1.) • 동조동향 단서 제6호 (2002. 4. 1.) • 법률부칙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부칙 제2조 (2002. 4. 1.) 	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자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신 설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1. 4. 1. 이전에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나,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지정당시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가 해소시킨 경과후에도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만 제한 • 의결권금지대상주식은 개별회사로부터 통지받아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가능 •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내역을 공시 •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의결권 행사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과징금부과 •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법 제17조의2 제1항, 부칙 제3조(2002. 4. 1.) • 동법 제17조의2 제2항, 제3항 (2002. 4. 1.) • 동법 제17조의2 제4항 (2002. 4. 1.) • 동법 제17조의2 제5항 (2002. 4. 1.) • 동법 제69조의2 제1항제4호 (2002. 4. 1.) 	<p>기업집단과 503-9124</p>

번호	제 목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담당과
7	•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예외확대	• 금융업 또는 보험업영위 회사가 그 영업을 하기 위한 경우,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관계법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	• 기존의 예외인정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행사 가능 - 계열상장사의 임원임면, 정관 변경, 피합병, 영업의 양도(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지분율 30%까지 행사 가능)	• 동법 제11조 (2002. 4. 1.)	기업집단과 503-9124
8	•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채무보증해소기간 연장	• 편입일 또는 지정일부터 1년간 채무보증해소유예	• 편입일 또는 지정일부터 2년간, 다만 회사정리절차,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그 절차종료일까지 유예	• 동법 제14조제3항제3호 (2002. 4. 1.)	기업집단과 503-9124
9	•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 무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	• 현물출자 또는 상법상의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 설립하는 경우 부채비율은 1년간, 자회사지분율 및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2년간 유예기간 인정	• 자회사 주식이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과 자회사지분율 제한, 자회사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유예기간 인정 • 벤처지주회사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자회사지분율 제한에 1년간 유예기간 인정	• 동법 제8조의2 제1항	독점정책과 503-9123
10	•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대상 확대	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, 벤처투자 등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	•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(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) 설립 또는 취득 시에도 신고의무 면제	• 동법 제12조제2항제3호	독점정책과 503-9123
11	• 소비자현상경품 총액한도액 예외인정	• 소비자현상경품 총액한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예상매출액의 1% 범위 이내	• 총액한도 예외인정 -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 총액이 1,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%를 초과하여도 부당한경품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함	• 경품고시 제8조 제1항 후단 (2002. 1. 1.)	유통거래과 503-9078
12	• 부당공동행위 신고 보상제도 도입	<신 설>	• 부당공동행위(카르텔) 제보자에 대해 최고 2,000만원의 보상금 지급	•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규정 (2002. 1. 1.)	공동행위과 504-4163
13	• 과징금 분납신청제도 개선	• 과징금 분납신청은 과징금 납부기한 10일 이전에 가능	• 과징금 분납신청 기한을 이의신청 기한과 동일하게 조정 -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	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4 (2002. 4. 1.)	심판관리 1담당관 504-5142